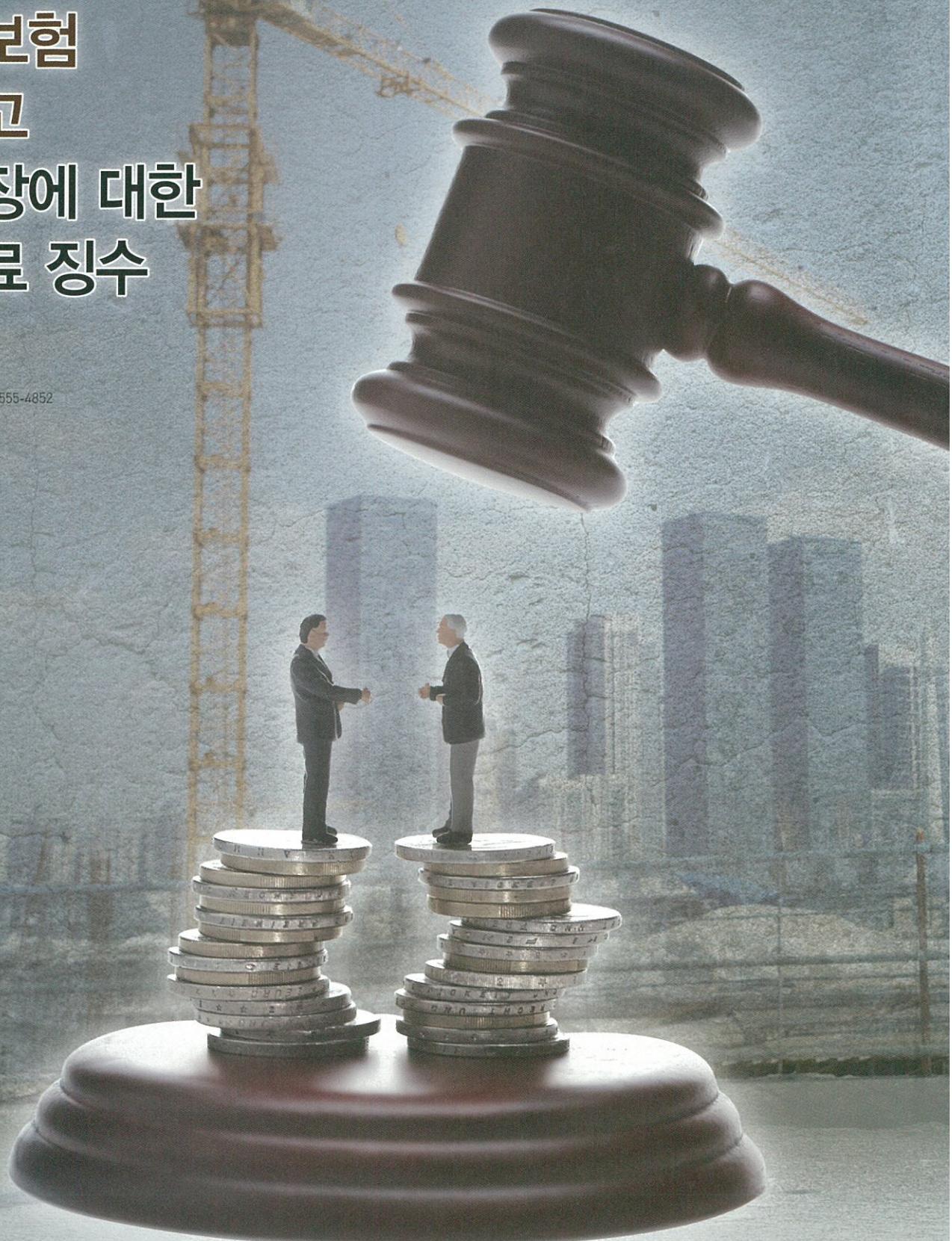


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징수

—
신현순노무사 | 032-555-4852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강제 적용 되며 또한 일정 요건하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강제성립을 요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여전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4대 보험가입률은 50% 이하라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게다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의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사회보험 부담금에 대한 노사의 부당한 의사가 일치하여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신분이 불안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원치 않는 상황도 많다. 상시근로자 1-3인의 초소규모 사업장의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욱 그러하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개인의 임금소득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는 여타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장이 보험가입 주체가 되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속 근로자 1인이라도 성립을 마치면 부득이 신고를 하지 못하였던 다른 소속근로자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여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징수부담은 없다. 하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것이 업무상 요건에 해당되면 당연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만 이외 불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보험료 징수를 당할 수 있다. 또한, 보험료를 태만히 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그러하다.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금여를 징수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을 살펴보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금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호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계올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계올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등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계올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가입재해 관련 판례

이러한 미가입재해 관련 판례(2007.05.10, 대법 2007다19)를 살펴보자. ‘한편, 이 사건 유족급여 중 50% 상당액 징수처분과 같이, 이 사건 사망사고 및 징수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위법상의 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재해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는 불문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사업을 행할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느 한 사업장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기적용된 사업장에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누락한 사업장의 보험료까지 모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이다(보험적용부-2378, 2010.9.30).

즉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누락하였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도 미가입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가 미가입재해로 처리되어 막대한 징수부담이 되고 이러한 상황이 당해 사업자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법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필히 하여야 할 것이다. ☺